

2023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노인의 연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민간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3년 1월 2일
보건복지부 장관

I.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노인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의 지정 및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4(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고용과 소득 보장)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 보조금 관리규정

□ 사업유형 및 지원내용

○ 사업유형

사업명	신청자격기준	대응투자비율	지원규모
고령자친화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운영기간)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 기준) • (매출액) 전년도 3억원 이상 • (근로자수) 전년도 기준 5명 이상 • 업종별 고령자 기준고용률(고용노동부 고시)을 충족(최소 5명 이상)한 기업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고용(최소 5명 이상,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하고자 하는 기업 	대응 투자 비율에 따라 현장심사 점수 차등 적용	개소당 최대3억원

※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투자 사업의 경우, 신규 설립된 기업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및 초기투자비 지원(※ 중앙정부 및 지자체 투자액 범위 내 1회한) 가능(지정연도에 고령자 미고용 가능하고 고용 인원에 따른 지원금 미지급)

○ 지원방식 및 규모

사업명	지원규모	지원방식	최소 고용 목표 인원
고령자친화기업	신규 고용인원 1인당 500만원	단년도 지급	5명

※ 신청기업의 전년도 상시근로자 인원을 초과하여 고용목표인원 신청 불가 (기술혁신, 사업 확장 등 근거가 명확한 경우 중앙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용 가능)

※ 신규 고용인원 외에 사업신청 당시 업종별 고령자 기준고용률(최소 5명)에 따라 기 고용된 고령인원도 관리인원에 포함(※ 미충족 시 재인증 불가)

※ 사업운영에 필요한 관리비용은 지원금액의 10% 이내에서 집행 가능

○ 지원내역

- 고령자 적합 작업 장비 및 설비, 편의 시설 설치·구입 비용
- 고령자에 대해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 고령자 적합 직무에 대한 교육 비용
- 고령자친화기업 사업 추진에 필요한 홍보 및 마케팅 비용
-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문(관리)인력 인건비(지원금액의 30% 이내)
- 기타 고령자 고용 확대 및 고용 유지에 필요한 간접 비용
- 기업 성장지원 컨설팅 지원(기술·인증, 디자인, 상품사업화 등)
- 고령자친화기업 생산품(용역) 우선구매 제도 지원
- 정부 입찰 참여 가점 지원(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 1.25점) 등

□ 심사 및 선정

○ 심사구분

심사단계	현장심사	선정심사
심사시기	상시	연 4회
심사주체	현장심사위원회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내용	자격기준, 사업수행능력 등 평가	현장심사 결과 검토 및 확정

○ 심사기준

- (현장심사) 자격기준, 사업내용, 수행능력, 사업효과, 대응투자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심사
- (선정심사) 현장심사 결과 검토 및 확정

II. 추진일정

구 분	주요 내용	추진일정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업공고 • 사업설명회 개최 * 온라인(유튜브 등), 지역별·기업별 사업설명 • 공모 계획서 신청 및 접수 	'23. 1. 2.(월) ~ 12. 29.(금)
현장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기업 대상 현장 심사(상시 운영) * (심사 기준) 자격기준, 사업내용, 수행능력, 사업 효과, 대응투자 등 5개 영역 • 현장 심사 결과보고(개발원 → 복지부) 	매월 접수 및 상시 심사
선정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 기간 중 총 4회 진행 * (대상) 신청기업 중 현장 심사 합격 기업 * (내용) 현장 심사 결과 검토 및 확정 	연 4회
공모선정 결과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리집 공지 및 선정기관 개별 안내 * 보건복지부 : www.mohw.go.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www.kordi.or.kr 	선정 심사 종료 이후 1주일 이내
계약체결 및 보조금 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행계약 체결 • 선정기업 대표(담당자) 기본교육* 추진 * (교육내용) 사업이해, 경영관리(회계·노무·법률)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이행계약) 선정 후 30일 이내 (보조금지급) 이행계약 이후

※ 월별 공모세부 일정은 참고자료 1. 참조(공모는 당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Ⅲ. 세부 추진내용

□ 신청자격

- (자격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의 사업 운영기간, 매출액, 상시 근로자 수, 업종별 고령자 기준 고용률 기준을 모두 충족한 기업
 - (사업운영 기간) 사업운영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 기준)
 - (매출액)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상(전년도 재무제표 기준)
 - (근로자 수) 전년도 기준 근로자* 5명 이상
 - * 전년도에 6개월 이상 4대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직원
 - ※ 대표자는 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투자 사업의 경우 별도 자격기준 운영
 - (업종별 고령자 기준고용률) 접수일 기준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고, 업종별 고령자 기준고용률*(1~23%)을 충족한 기업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고용(최소 5명 이상,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하고자 하는 기업(※ 인력파견 유사업종은 지원 제외**)
 - * (기준고용률) 접수일 기준 신청 사업의 전체 근로자수에 대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의 비율(참고2 자료 참조)
 - ** 사업자등록증에 인력파견업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지정된 고령자친화기업에서 인력파견 관련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 공모 신청을 위해 기존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최근 6개월 이내 (경영상) 해고 또는 권고 사직하는 등 인위적 감원조치를 취한 경우 참여 제한
 - ※ 개인사업자가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선정되어 법인 전환 시 신설 법인의 자격기준은 사업신청 당시 개인사업자의 자격기준으로 같음함
 - ※ 공모신청서 접수일 이후 고용한 고령자(만 60세이상) 중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연간 6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참여자에 한해 실적 인정

□ 대응투자

- (대응투자 이행) 고령자친화기업에 지정되고자 하는 기관(기업)은 직접 또는 다른 기관(기업)을 통해 지원 신청액의 일정 비율(최소 30% 이상 투자 시 득점 가능) 이상을 대응투자 하여야 함

※ 대응투자 비율에 따라 현장심사 점수 차등 적용(붙임1 자료 참조)

< 대응투자 인정·집행기준 >

- 신청기관이 고령자친화기업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현금투자에 한함
- 지자체(정부)가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지자체(정부)에서 무상제공하는 부동산(토지, 건물) 등의 공식 감정가액의 10%를 현금투자로 인정 (단, 소유권 이전 시 전액 인정)
※ 현물투자(부동산, 시설장비류, 차량 등)는 소유권 이전 및 대여방식, 대여기간 등 투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대응투자 이행계획서 제출 (감정가액 환산적용)
- 대응투자 이행완료 확인 후 예산지원 (선 대응투자 → 후 예산지원)

□ 신청제한 요건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개발원 등으로부터 사업 중단 조치를 받은 기관(기업)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동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 법인이나 그 법인 대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3년 내 개발원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약해지를 받은 기관(기업)
 - 기업의 부도, 화의 및 법정관리 중인 기업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 임금체불 기업, 사회보험료 미납 기업

- 법인의 대표나 임·직원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보조금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어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유죄를 선고 받고 형 집행 종료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보조사업 신청자격, 수행능력이 없는데도 자격을 위조하거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등
 -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고용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하여 현행법 위반을 확인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고령자친화기업 선정 이후 자진포기한 기업의 경우, 자진포기일 기준으로 동일기업 및 동일 대표자 명의로 익년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 지원 불가
- 관리기간 동안 인건비 누적지급총액이 보조금지급액을 초과하지 않고 관리종료한 고령자친화기업은 관리기간 종료 이후 3년간 동일 대표자 명의로 고령자친화기업 사업 신청 불가

□ 심사 및 선정

- 현장 심사
 - (심사시기) 신청 접수된 기업을 대상으로 상시 심사 진행
 - ※ 당해 연도 예산 소진 시 상시 공모 조기 종료
 - (위원구성)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경영컨설턴트 2인 이내
 - ※ 필요 시 외부 전문가 2인 이내 구성 가능
 - (심사방법) 현장 방문 심사
 - (심사기준) 자격기준, 사업내용, 수행능력, 사업효과, 대응투자 등 5개 영역을 심사하여 70점 이상 득점한 신청 기업(기관) (**붙임1 자료 참조**)
 - (결과통보) 현장 심사 통과 기관(업)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누리집 게시 및 합격 기관(기업)에 개별 통보

○ 선정 심사

- (심사시기) 현장 심사 합격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연 4회 진행
- (위원구성) 보건복지부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관련 외부전문가 등 7인 이내로 구성
- (심사방법) 현장 심사 결과 검토 및 최종 확정
- (결과안내) 선정 심사 이후 7일 이내 보건복지부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기관(기업)에 개별 안내

□ 제출서류 및 제출처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부속서류 각 1부
(서약서, 사업계획서, 기업(법인)현황, 대응투자 이행계약서, 신용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 동의서,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선정 관련 사항 확인서)
-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견적서 등) 일체
-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법인 재무제표 당기, 전기(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각 1부
- 사회보험 완납 납부증명서 및 가입자명부 각 1부(접수일 기준)
- 관리인력(전문인력) 인건비 산정 근거 자료
 - ※ 해당인력 이력서, 최근 2년 이내 소득 증빙자료(급여내역서, 소득세 자료 등)
 - ※ 총 지원예산의 30% 이내에서 편성 가능하고 급여액 책정 한도는 보조금은 월 200만원, 대응투자금은 월 300만원임
- 전체 근로자명부 사본 1부(성명, 생년월일, 재직기간 및 기타 근로조건 기재 필수,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 만 60세 이상 재직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 ※ 임금대장 내 만 60세 이상 근로자는 별도 표시 요망
- 컨소시엄 구성·운영 협약서 사본 1부(해당 시, 공증 필수)
- 컨소시엄의 경우 고령자친화기업 지정 시 주식 취득 비율(해당시)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투자 사업의 경우 투자액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해당 시)

○ 공모서류 제출처

- (제출기간) '23. 1. 2.(월) ~ 12. 29.(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방문제출 시 휴일 및 18시 이후에는 접수하지 않으며 우편제출 시 매일 말일 우편 소인분까지 유효

※ 당해 예산 소진 시 상시 공모가 조기 종료되므로 사업신청 전 반드시 지역별 경영컨설턴트에게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요망

- (제출방법) 방문 및 우편제출(※ 이메일 제출 불가)

※ 신청서 등 제출서류 원본 1부(1권으로 합철) 및 USB 제출

- (제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권역별 연락처 참조)

권역	제출처	연락처	담당자
서울·강원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7 와이즈타워 19층 민간일자리통합지원센터	02-6731-6119 02-6731-6128	경영 컨설턴트
부산·울산 경남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95 (거제1동 46-4) 주성산빌딩 3층	070-4372-3061 070-4372-3065	
대구·경북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벤처센터 3층	070-4736-7093 070-7875-2477	
경기·인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7 와이즈타워 19층 민간일자리통합지원센터	02-6731-6117 02-6731-6118	
광주·전남 전북·제주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4 (중흥동 700-5) SRB빌딩 6층	062-714-1293 062-525-5782	
대전·충남 충북·세종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52 이안빌딩 7층	070-5118-2218 070-8795-4022	

IV. 기타 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관별 심사결과 접수 등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선정기관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령자친화기업 운영 안내” 등 보조금 사업 수행과 관련한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할 수 있음
- 기타 문의 사항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권역별 연락처) 문의 요망

<참고 1> 월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세부일정(안)

<참고 2> 인증형 업종별 기준 고용률 기준

<붙임 1> 심사 및 선정 기준

<붙임 2> 고령자친화기업 예산편성 기준

<붙임 3>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접수대장

<붙임 4>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현장심사 결과표

<붙임 5>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현장심사 검토의견서

참고1

월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세부일정(안)

구 분	주요 내용	추진 일정
1~2월	접수기간	'23. 1. 2.(월) ~ '23. 2. 28.(화)
	현장 심사	'23. 1. 2.(월) ~ '23. 2. 28.(화) 중 상시
	선정 심사	'23. 3. 10.(금)
	공모 선정 결과 안내	~ '23. 3. 17.(금)
3~4월	접수기간	'23. 3. 2.(목) ~ '23. 4. 28.(금)
	현장 심사	'23. 3. 2.(목) ~ '23. 4. 28.(금) 중 상시
	선정 심사	'23. 5. 12.(금)
	공모 선정 결과 안내	~ '23. 5. 19(금)
5월~6월	접수기간	'23. 5. 1.(월) ~ '23. 6. 30.(금)
	현장 심사	'23. 5. 1.(월) ~ '23. 6. 30.(금) 중 상시
	선정 심사	'23. 7. 7.(금)
	공모 선정 결과 안내	~ '23. 7. 14.(금)
7월~12월	접수기간	'23. 7. 3.(월) ~ '23. 12. 29.(금)
	현장 심사	일정 미정
	선정 심사	일정 미정
	공모 선정 결과 안내	일정 미정

※ 2023년 예산 소진 시 상시공모는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며 세부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참고2

업종별 기준 고용률 기준

□ 업종별 기준 고용률 기준

구 분		지원기준율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35~3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63) 금융 및 보험업(64~66)		1%
운수업(49~52)		3%
건설업(41~42) 숙박 및 음식업(55~5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90~9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94~96)		4%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97~98)		6%
광업(05~08)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37~39)		7%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업(74~75)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74100) 건축물일반청소업(74211) 소독,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74220)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75310)	12%
	탐정 및 조사서비스업(75330)	23%
	기타 업종	7%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국제 및 외국기관(99)		12%
그 밖의 업종		2%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5호(2020.10.21.),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업종별 지원기준율

※ 사업에 대한 구분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적용

* (기준고용률 예시 1) 운수업종 기업에서 신청 할 경우(전체 근로자 30명)

- 기준 고용률(운수업) 3% 적용, 전체 근로자 30명 * 3% = 0.1명이지만 접수일 이전 인증형 최소 고용 5명 이상 기준 적용으로 만 60세 이상 근로자 5명 이상일 경우 공모 지원 가능

* (기준고용률 예시 2) 건설업종 기업에서 신청 할 경우(전체 근로자 200명)

- 기준 고용률(건설업) 4% 적용, 전체 근로자 200명 * 4% = 8명이므로 만 60세 이상 근로자 8명 이상일 경우 공모 지원 가능

□ **심사 및 선정 기준**

○ **현장심사 기준**

심사영역	세부기준	배점												
수행능력	<p>< 공통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기준(충족여부) - 사업운영기간, 매출액, 근로자수, 업종별 고령자 기준고용률 기준 충족 여부 <p>< 영리기업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건전성(20점) - 부채비율(5점), 유동비율(5점), 매출액증가율(5점), 매출액 영업이익률(5점) • 사업화능력(15점) - 상품 및 서비스개발 능력(5점), 전문인력(자격)확보 및 관련 기술 보유 여부(5점), 사업화 인프라 보유(5점) <p>< 비영리기업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화능력(35점) - 상품 및 서비스개발 능력(15점), 전문인력(자격)확보 및 관련기술 보유 여부(10점), 사업화 인프라 보유(10점) 	35점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적합성, 노인업무 적합성, 시장경쟁력 확보 가능성 	25점												
사업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창출 효과, 추가 연계사업 확대 가능성, 지역사회 파급 효과 및 인식개선 기대효과 	25점												
대응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투자 적합성 : 대응 투자금 / 신청 보조금 * 100%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대응투자 비율</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90% 이상</td> <td>15점</td> </tr> <tr> <td>70%이상 90%미만</td> <td>12점</td> </tr> <tr> <td>50%이상 70%미만</td> <td>9점</td> </tr> <tr> <td>30%이상 50%미만</td> <td>6점</td> </tr> <tr> <td>30%미만</td> <td>0점</td> </tr> </tbody> </table>	대응투자 비율	점수	90% 이상	15점	70%이상 90%미만	12점	50%이상 70%미만	9점	30%이상 50%미만	6점	30%미만	0점	15점
대응투자 비율	점수													
90% 이상	15점													
70%이상 90%미만	12점													
50%이상 70%미만	9점													
30%이상 50%미만	6점													
30%미만	0점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 창업 여부 - 신청기업(관) 대표자가 만60세이상일 경우 	3점												

- (선정기준) 배점(100점) 기준 70점 이상 득점한 신청 기업(기관)

< 현장심사 세부 기준 >

심사영역	심사항목	배점	
수행능력평가 (35점)	< 영리기업용 >		35점
	자격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기준 충족 여부 ※ 평가기준 : 사업운영기간, 매출액, 근로자수, 업종별 고령자 기준고용률 기준 충족 여부 	충족 □ 미충족 □
	기업 건정성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채비율 ※ 평가기준 : 전년도(부채총계*100/자본총계)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동비율 ※ 평가기준 : 전년도(유동자산*100)/유동부채)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증가율 ※ 평가기준 :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100/전기매출액)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영업이익률 ※ 평가기준 : 전년도(영업이익*100)/매출액 	5점
	사업화 능력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및 서비스 개발능력 ※ 자체개발·생산설비 보유, 사업화 관련 전담부서 보유여부 등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인력(자격)확보 및 관련기술 보유 ※ 운영인력 전문성, 보유기술 등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화 인프라 보유 ※ 사업화를 위한 협력기관 및 인프라 구축 활용성 	5점
	< 비영리기업용 >		35점
	자격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기준 충족 여부 ※ 평가기준 : 사업운영기간, 매출액, 근로자수, 업종별 고령자 기준고용률 기준 충족 여부 	충족 □ 미충족 □
	사업화 능력 (3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및 서비스 개발능력 ※ 자체 개발·생산설비 및 활용가능 외부설비 보유, 사업화관련 전담부서·전담인력 보유 및 배정여부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인력(자격) 확보 및 관련 기술 보유 여부 ※ 전문인력의 해당분야 국가 및 관련단체 자격증 보유, 평균근속연수, 보유기술 경쟁력, 특수기술 보유, 독창성, 지적재산권 확보 등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화 인프라 보유 ※ 사업화를 위한 협력기관 및 인프라 구축·활용성 		10점	
사업내용 (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적합성 ※ 사업의 타당성, 구체성, 사업계획과의 부합성 등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업무 적합성 ※ 노동강도, 기술난이도, 대인관계 등 	10점	

심사영역	심사항목	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경쟁력 확보 가능성 ※ 경쟁력 확보 여부 및 경쟁우위 요소, 사업수요의 지속성 등 	5점												
사업효과 (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창출 효과 ※ 신규 고용창출 가능성, 수익창출을 통한 고용유지 등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연계사업 확대가능성 ※ 폭 넓은 전후방 연관사업, 파급효과 등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파급 효과 및 인식개선 ※ 사회문제해결, 고령자 인식개선 및 커뮤니케이션 통로 다양화 등 	5점												
대응투자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투자 적합성 : 대응 투자금/신청 보조금*100%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응투자 비율</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90% 이상</td> <td>15점</td> </tr> <tr> <td>70%이상 90%미만</td> <td>12점</td> </tr> <tr> <td>50%이상 70%미만</td> <td>9점</td> </tr> <tr> <td>30%이상 50%미만</td> <td>6점</td> </tr> <tr> <td>30%미만</td> <td>0점</td> </tr> </tbody> </table>	대응투자 비율	점수	90% 이상	15점	70%이상 90%미만	12점	50%이상 70%미만	9점	30%이상 50%미만	6점	30%미만	0점	15점
	대응투자 비율	점수												
	90% 이상	15점												
	70%이상 90%미만	12점												
	50%이상 70%미만	9점												
	30%이상 50%미만	6점												
30%미만	0점													
가점 (3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 창업 여부 - 신청기업(관) 대표자가 만 60세이상일 경우 * 사업계획서 내에 해당 내용 기재 시 가점 인정 	3점												
합 계		103점												

※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확인

※ 전문인력이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인력으로서 정규직과 프리랜서 포함

※ 가점을 받은 기업에서 고령자친화기업 지정 시 대표자가 만60세 이상인 자가 아니거나 개발원 사전승인 없이 대표자를 만60세 미만 인자로 변경 시 계약해지 검토

○ (선정심사 기준) 현장심사 결과 검토 및 확정

고령자친화기업 예산편성 기준

비목	세 목	편성 기준
인건비	인건비* (사회보험 포함)	- 기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관리)인력 인건비
사업비	임차비**	- 고령자의 작업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부동산 임차에 관한 경비(월세) - 고령자 고용유지 및 확대,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및 장비의 임차에 관한 경비(리스비용)
	시설투자비	- 고령자의 적합 작업 설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목적의 시설투자비 및 이에 필요한 수용비, 수수료, 감정료 등
	자산취득비	- 고령자 적합 작업장비 및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자산 구입 및 리스 비용 ※ 차량은 가급적 리스로 처리
	교육·훈련비	- 전문인력 양성 및 종사자 교육훈련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전문교육 수강료, 경영스쿨 참가비 등)
	홍보활동비	- 신문, 방송, 홈페이지 등을 통한 해당 사업 또는 사업단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고령자 채용광고 포함)
	사회보험료	- 사회보험료 기업부담금에 한해 집행
	관리 운영비***	공공요금
여비(국내)		- 사업 참여인력의 출장경비(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함)
기타 경비		- 사무용 비품 및 집기 등 - 보고서 등 인쇄비용 - 사업 추진을 위한 내.외부 회의비용 - 기타 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 등

* 총 지원예산의 30% 이내 편성가능(보조금 : 최대 월 200만원, 대응투자금 : 최대 월 300만원)

** 건물 임차시 보증금 및 권리금 제외

*** 총 지원예산의 10% 이내에서 편성·집행 가능